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312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965,4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1.부터 2009. 4.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0.부터 2009. 4.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1531)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05835)에서 2010. 8. 26.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갑 제1, 2호증).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965,4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1.부터 2009. 4.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0.부터 2009. 4.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출금의 변조로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소는 위 조정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에 대하여 2013. 10. 7.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채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그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이러한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되,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235 결정 등 참조).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3. 10. 7.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이 있어 2013. 10. 22.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2하면2632, 2012하단2632), 위 면책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사전구상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였고, 1심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2010. 8. 26.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발생한 것인 점, ② 피고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2. 8. 27. 파산신청을 한 점, ③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